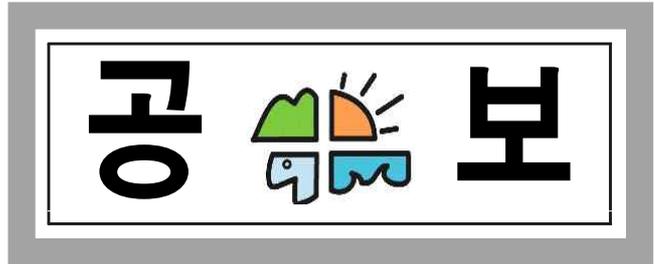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35호 2014년 2월 11일(화)

공 고

-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 이유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속초국민체육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1)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속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체육센터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1) 연중개방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다.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1) 연령, 단체, 기간 등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사항

마.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안 제15조)

- 1) 체육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4. 기 간 : 2014. 2. 11~ 2014. 3. 3(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7.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3-639-3713, FAX: 033-639-2348)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속초국민체육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1)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속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체육센터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1) 연중개방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다.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1) 연령, 단체, 기간 등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사항

마.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안 제15조)

- 1) 체육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촉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2.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만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사업) 속초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2.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관리실 등

제5조(체육센터의 개방 및 이용)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센터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④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2. 설연휴 및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히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기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등

② 제1항의 각 호마다 2명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9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중에 위대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음주자 등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②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한정하여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 시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제14조(손해배상) ①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진행중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속초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1조 관련)

□ 1일 및 1개월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대 상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수 영 장	성 인	3,500	60,000	30명 이상 단체: 20% 할인
	청소년·군인	2,500	45,000	
	어린이, 경로대상자	2,000	40,000	
헬 스 장	성 인	3,000	40,000	
	청소년·군인	2,500	30,000	
	어린이, 경로대상자	2,000	25,000	
에어로빅장	성 인	3,000	40,000	
	청소년·군인	2,500	30,000	
	어린이, 경로대상자	2,000	25,000	

※ 1개월 초과 사용자의 할인율

구 분		할인율	비 고
장기등록 할인	3 개월	5%	
	6 개월	10%	
	12개월	15%	
2종목 이상 등록 시		각 종목별 10%	